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0-729호

**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
결정(변경)(안),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**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96호(2015.09.24.)로 송파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8호(2020.02.13.)로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1지구, 제2지구로 변경 결정된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, 재정비 결정(변경)(안) 및 해당구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대하여,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
3.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재정비(안),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5월 7일

송 파 구 청 장

가. 공 고 일 : 2020. 5. 07.

나. 열람기간 : 2020. 5. 07. ~ 2020. 05. 21. (14일간)

다. 열람장소 : 송파구청 도시계획과

라. 열람내용

○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송파대로변 석촌동, 송파동 일대	78,419	증) 4,729	83,148	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

구역명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	송파대로변 석촌동, 송파동 일대	구역계확장 증)4,729m ²	지역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일부 지역 구역계 확대

마.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내용

○ 제한지역 :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

○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

- 「건축법」 제11조, 제14조, 제16조, 제19조에 의한 건축허가, 건축신고,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, 용도변경(불허용도)

○ 제한 예외 대상

-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행일 이전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
-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며, 지구단위계획(안)에 따라 용적률, 불허용도, 건축한계선, 공공보행통로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

○ 제한기간 :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

※ 단,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(신규) 및 계획결정(변경)이 고시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

바. 관계도서 : 생략 (열람 장소에 비치)

사.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(담당: 정은애/ ☎: 2147-3001) 및 관할동 주민센터(석촌동☎: 2147-4360, 송파1동☎: 2147-4300, 송파2동☎: 2147-4330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끝.